

고성군세조례 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62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14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부일자 : 2004. 6. 15 | |
|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4. 6. 18 |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군세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보통우편 송달 신설(안 제17조)
- 나.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, 주행세, 담배소비세,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 마련(안 제21조, 제22조의2, 제40조의4, 제60조, 제61조, 제98조)
- 다. 2005년도부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일할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.(안 제38조의 2)
- 라.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천분의 175로 인상함.
(안 제40조의 3)
- 마. 주행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이나 경정 또는 신고, 부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신설(안 제40조의 6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(2003.12.30 법률제7013호)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,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,
-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, 주행세, 담배소비세,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토록 하는 한편
- 매매·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
-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였으나, 2005년도부터 일할계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.
-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하고,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군수가 결정·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현행 “신고납부”와 개정안 “신고 및 납부”의 차이점은?
- 답 : 주민세 납세 의무자가 종전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 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 했음.
- 문 : 조례안 제40조의3 주행세의 세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상되는 지?
- 답 : 주행세 법정세율은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종전에 비하여 1천분의 60 즉 6%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함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6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